의안번호	2201069
의 뢰 인	김선교의원
회 답 일	2024.07.25.
추계번호	24D138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2029년 기간 동안 3억 3,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 2025~2029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추가 수급자 생활조정수당 지급	52	59	66	74	83	335
합계	52	59	66	74	83	33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생활조정수당) 안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안 제14조의3(조사·질문 등), 안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9조(양로지원)	본인 및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가구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부양의무자 개념을 가구원으로 대체함	의무규정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4조(생활조정수당) 안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안 제14조의3(조사·질문 등), 안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9조(양로지원)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본인 및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가구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부양의무자 개념을 삭제하여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재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및 그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1]을 충족할 경우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다만, 독립유공자 및 그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40% 이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음

❑ 개정안에 따라 부양의무자 개념을 삭제할 경우, 현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 50% 이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대상자 중 부양의무자 조건으로 인해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독립유공

1)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국가보훈부 고시 제2024-7호) 제8조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수권자 기준금액의 100분의 40과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금액을 더한 금액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는 추가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게 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개정안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

가. 부양의무자 유무 기준 폐지에 따른 추가 수급자 생활조정수당 지급

(1) 대상자

❑ 현행법령은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2]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만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하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3]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 없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한편,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3년부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여, 2023년부터 수급자가 중상이자인 경우, 2024년부터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음

○ 따라서 2024년 현재 소득기준으로는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는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 50% 이하인 가구(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65세 미만이면서 중상이자가 아닌 경우가 해당됨

---

2)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국가보훈부 고시 제2024-7호)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수권자 기준금액의 100분의 40과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금액을 더한 금액 미만인 경우를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3)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됨

❑ 개정안과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현재 부양의무자가 있어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독립유공자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중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생활조정수당 미수급자는 2024년 6월 기준 16명임

[표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생활조정수당 미수급자 현황: 2024.6월

(단위: 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합 계
생활조정 수당	수급자	258	5	263
	미수급자	11	5	16
	합 계	269	10	279

자료: 국가보훈부

❑ 2024년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미수급자 수에 추계기간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연평균 증가율 8.9%를 적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추가 수급자 수를 추정

[표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2018~2022년

(단위: 명, %)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수	1,743,690	1,881,357	2,134,186	2,359,672	2,451,458	8.9

자료: 국가통계포털

[표 4]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추가 수급자 수 추정: 2025~2029년

(단위: 명, %)

	2025	2026	2027	2028	2029	연평균 증가율
생활조정수당 추가 수급자 수	17	19	21	22	24	8.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수급자 중 기준중위소득 40% 초과 50% 이하인 수급자의 가구원수별 구성비를 적용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추가 수급자의 가구원수별 구성을 추정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추가 수급자를 가구원수별로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5]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중 기준 중위소득 40%~50%인 경우의 가구원수별 구성: 2023년

(단위: 명, %)

가구원 수	1	2	3	4	합계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수	53	9	2	1	65
비중	81.5	13.8	3.1	1.5	100.0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표 6]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추가 수급자의 가구원수별 구성 추정: 2025~2029년

(단위: 명)

가구원수	2025	2026	2027	2028	2029
1	14	15	17	18	20
2	2	3	3	3	3
3	1	1	1	1	1
4	0	0	0	0	0
합계	17	19	21	22	24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지급단가

❑ 국가보훈부는 2024년 현재 가구원수를 2명 이하, 3명 및 4명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고 가구당 가계지출비[4]와 기준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이 32% 이하, 40% 이하, 50% 이하인 경우로 구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생활조정수당을 차등지급하고 있음

4) 국가보훈부는 가구원수가 2명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아니라 가구당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완화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추후 기준 중위소득으로 기준을 통일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표 7] 독립유공자 생활조정수당 가구원수별, 소득수준별 월지급액

(단위: 천원)

가구원수	소득인정액[1] 비교 기준		생활조정수당 월지급액
2명 이하	가구당[2] 가계지출비	50% 이하	242
		40% 이하	277
		32% 이하	311
3명	기준 중위소득[3]	50% 이하	242
		40% 이하	277
		32% 이하	311
4명 이상		50% 이하	300
		40% 이하	336
		32% 이하[1]	370

주: 1)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의미
2) "가구당 가계지출비"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가계지출비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추계한 비용을 의미
3)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의미
자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3]를 참고하여 재작성

❑ 최근 5년간(2020~2024년) 생활조정수당의 월 지급액은 다음 표와 같음

[표 8]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조정수당 월 지급액: 2020~2024년

(단위: 천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인상률 (%)
3명 이하	50% 이하	214	220	220	220	242	3.1
	40% 이하	245	252	252	252	277	3.1
	32% 이하	275	283	283	283	311	3.1
4명 이상	50% 이하	265	273	273	273	300	3.1
	40% 이하	296	305	305	305	336	3.2
	32% 이하	326	336	336	336	370	3.2

주: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3] 일부 개정(시행 2024. 1. 12.)으로 2023년까지 30% 이하의 월지급액이며, 2024년은 32% 이하 월지급액임
자료: 국가보훈부

❑ 최근 5년간 생활조정수당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 50% 이하 독립유공자 가구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월 지급액을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9] 기준중위소득 40% 초과 50% 이하 독립유공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월 지급액 추정: 2025~2029년

(단위: 천원)

가구원수	2025	2026	2027	2028	2029
1	250	257	265	274	282
2	250	257	265	274	282
3	250	257	265	274	282
4	309	319	329	340	350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추가 수급자 수 추정치([표 6])와 개정안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월지급액 증가액 추정치([표 9])를 곱하면, 2025~2029년 기간 추가재정소요는 3억 3,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가구원수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1	43	48	54	60	68	272
2	7	8	9	10	11	46
3	2	2	2	2	3	10
4	1	1	1	1	2	6
합계	52	59	66	74	83	335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2029년 기간 동안 3억 3,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 2025~2029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추가 수급자 생활조정수당 지급	52	59	66	74	83	335
합계	52	59	66	74	83	33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Ⅳ. 부대의견

❑ 본 추계는 독립유공자의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현재 이용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이므로, 향후 실제 독립유공자의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추계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